

자료집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2015년 3월 12일(목) 오전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자료집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2015년 3월 12일(목) 오전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식순 및 목차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진행 : 김도영(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

■ 인사말

이충재(민주사법 연석회의 공동대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___ 6

■ 주제 발표

사회 :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1> 박상옥 대법관 후보 왜 안되는가 _____ 9

김학규(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 사무국장)

2>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 _____ 21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 토론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____ 38

신수경(새사회연대 상근대표) _____ 40

성창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_____ 42

■ 질의응답

□ 부록

인사말

과거 독재 권력의 정치검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충재(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난 87년 민주열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주임검사였습니다. 사건은 88년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던 고문치사 최고 책임자인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죄가 드러나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였음이 훗날 재수사에서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박상옥 후보는 자신은 당시에 수사팀 말석 검사로써 외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서도 몰랐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백번 양보하여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당시 수사에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무능력한 검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시절 검사로 재직하며, 주요 시국사건 그것도 군사독재 권력의 물고 문에 의한 사망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정치검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능력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나라. 국민은 불행합니다. 대법관에 무슨 검사 몫이 있다는 것도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무자격 박상옥 후보가 추천되고 임명제청 되는 제도적 장치나 구조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대로 관철되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철저히 검증하여 대법관 책임자를 임명제청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인사청문에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촉구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임명제청권자의 권한을 넘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갖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파괴 정치개입행위입니다.

대법원장은 당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이유 그리고 검증 절차와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 임명제청한 책임을 정부나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왜 안 되는지 국민 앞에 다시한번 밝혀내고 확인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대법관 임명절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시다.

이 자리를 마련하고 애써 주신 민주사법연석회의 집행위원들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시는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위시한 시민인권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개혁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왜 안되는가

- 박종철군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의 수사검사로서
그가 한 역할을 중심으로

김학규(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사무국장)

□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

1.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 당시 수사검사의 일원으로 전두환군사독재정권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경찰의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에 협력한 검찰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이 된다는 건 박종철 열사를 ‘또 다시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한 날이 하필 박종철열사 28주기 기일인 1월 14일이었다는 점은 우연이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박상옥 당시 수사검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6월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 5공화국 전두환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박종철 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사건의 수사검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건 당시의 인권유린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박종철군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면서 축소은폐조작의 주범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던 6월 민주항쟁의 도도한 흐름에 함께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3.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을 모독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 이러한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없는 적격자’라면 법조계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수많은 법조인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법관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들은 법조계나 법조계 밖에도 많다.

□ 당시 검찰수사팀과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당시 검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1.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신화

-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가 채택·공개된 이후에도 ‘당시 검찰은 축소은폐조작에 앞장선 경찰과 안기부,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맞서 수사를 잘 했다’는 신화를 계속 믿으려고 하는 일각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신화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가 황적준 박사(당시 부검의)와 함께 88년 1월에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 과정에 사건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써 3차 수사를 이끌어내 강민창의 구속을 이끌어냈던 점, 1994년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가 “안검사의 일기”를 통해 검찰 수사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로운 검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인을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혀낸 주역으로 대대적으로 포장 홍보한 게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안상수 당시 검사는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약하고, 나아가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 해결의 주역임을 내세워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으니 그 신화는 현실적 힘으로까지 발전한 셈이다.

-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1/14) 경찰의 시신 화장을 통한 은폐 기도를 여러 외압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고 부검을 이끌어냄으로써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혀낸 주역은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가 아니라 최환 공안부장이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되었다. 안상수는 당직검사(1/15)로 최환 공안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검을 집행한 검사였다는 점에서 아무리 좋게 봐줘도 조연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 이제 이 잘못된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오도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검찰이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혀낸 것은 정말 ‘잘한 수사’이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한 수사는 그 무엇 하나 ‘잘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제 검찰과 검찰 수사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당시 검사가 어떤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

2. 당시 검찰수사팀과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당시 검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① 자체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김으로써 경찰의 축소은폐조작을 방조한 검찰

검찰(검찰총장 서동권)은 사건 초기 경찰의 화장을 통한 은폐기도를 막아내고 부검을 이끌어 냄으로써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히는데 핵심역할을 한 최환 공안부장을 잇선(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수사지휘체계에서 배제한다. “그렇다면 특수부에 맡기자”는 최환 공안부장의 요구마저 묵살한다. 이어 형사2부에 사건을 맡기면서 신창언 부장검사를 필두로 안상수, 이승구로 내사팀을 가동하지만, “경찰의 명예회복 기회 부여”라는 미명하에 수사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경찰 자체 수사에 맡긴다. 이미 사건 발생 초기 화장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면서 쇼크사로 거짓 발표했던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경찰에게 사건의 축소조작은폐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사건 초기 초동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함으로써 조한경과 강진규 2명의 경관에 의해 벌어진 ‘지나친 직무 의욕으로 인한 불상사’로 발표한다.

② 검찰로 송치된 1월 20일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인 1차수사팀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지나친 직무 의욕으로 인한 불상사’로 2명의 경관만이 관여되었다는 경찰의 거짓 발표를 뒷받침해주는 ‘추인수사’로 일관한 일

- 2명의 경관이 검찰에 송치된 후 박상옥 당시 검사도 1월 20일에 수사팀에 합류한다. 당시 수사팀은 신창언 부장검사, 안상수 검사, 박상옥 검사로 구성된다.(왜 이승구 검사가 빠지고 박상옥 검사로 대체되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당일 고문경관 2명이 수감된 영등포교도소로 출장 수사를 간 수사팀은 안상수가 조한경을, 박상옥이 강진규를 담당하여 23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나중에 함께 물고문에 참여한 인물로 밝혀지는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와 기타 관련 경찰들, 최초 목격자 오연상 내과의와 부검에 참여한 황적준 박사, 그리고 여러 주변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 이때 검찰 수사팀은 연행시간이 언제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고문 경관이 더 있을 가능성’, 윗선이 고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발표를 하는 등 축소조작은폐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확인만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수사 결과를 추인해주는 역할에 머문다. 고문경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은 현장검증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실황 조사’에 불과했다. 결국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과 4일간의 부실 수사를 거쳐 24일 오전에 부랴부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일부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수사가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팀은 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정확히 5명이라고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2명이 아니라 더 있을 거라는 점, 사건의 축소은폐조작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는 점 등에 어느 정도 접근했음에도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외면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이 확인된다.

- 일반적으로 물고문은 4-5명이 한 조가 되어 진행하며 급할 경우에도 최소 3명은 물고문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2차 수사시 황정웅 진술조서), 조한경은 1반 반장으로 총괄담당이고 강진규는 4반 소속이어서 이들 둘만이 한조가 되어 물고문을 진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2차 수사시 조한경 진술조서), 수사계획서 상에는 박종철에 대한 연행과 조사 담당이 반금곤이었기 때문에 박상옥이 강진규에게 “조한경과 반금곤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이 되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추궁한 사실이 있고, 이때 강진규가 “대답하지 않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도 1차 수사자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물고문 당시 14호실에 있었다”는 황정웅과 반금곤의 거짓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참고인이었던 사건 당시 14호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던 ㄱ씨에 대한 ‘참고인 조서’가 지나치게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점(박상옥 담당) 등은 박상옥을 비롯한 당시 수사검사가 물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2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를 덮는데 함께 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 박상옥 당시 수사검사는 14일 당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허위 보고서(최초의 ‘사고발생경위서’) 작성을 주도한 홍승상(5과 1계 계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안상수 검사는 물이 흥건했던 현장에 달려온 박처원, 전석린, 유정방, 박원택 등이 물고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음에도 형식적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를 통해 물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워선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폐쇄회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박원택의 진술, “우리과(5과)와 내 방에는 없고 3층 2과 과장실에 있는데, 기계가 노후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유정방(5과 과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현장검증 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

- 이는 단순한 부실수사 차원을 넘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추인하는 ‘추인수사’였으며, 검찰의 직무유기는 이미 1차수사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2월 27일 조한경, 강진규를 통해 ‘고문 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엄청난 내용’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수사계획서 작성 보고 후 5월 18일 김승훈 신부의 폭로가 있을 때까지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

- 안상수는 이후 “안검사의 일기”를 통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몰

랐다는 점에서 검사로서 자존심도 한없이 상했다. 수사기간이 불과 4일뿐이었고 대공분야에서 산전수전 겪은 조한경 등이 워낙 완강히 버텼으므로 나로서는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의 무너진 자존심이 되살아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한 바 있다. 물론 이 변명은 신뢰하기 힘들다. 그런 해명을 설사 수용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팀의 문제점은 계속 이어진다. 안상수는 이에 대해서도 2월 27일 조한경과 강진규를 통해 ‘고문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이야기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뒷선에서 수사지시가 없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본인도 이 문제점을 짚짚했던지 20년이 지난 2007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내가 그때 진실을 폭로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한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안상수 검사로부터 3월초에 들었다”면서 2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12일 여주지검으로 발령난 사실을 가지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한다. 그러나 1차 수사가 불과 4일 만에 끝났음을 상기해볼 때 ‘새로운 사실’을 인지한 후 최소한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여주지검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2월 초순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고문경관이 가족과의 면회 과정에서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이 교도소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로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2월 27일에 고문경찰 조한경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는 안상수 당시 검사의 증언, 3월 초에 안상수를 통해 들었다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증언의 사실여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아울러 당시에 “그런 사실을 경찰에 알려 경찰이 회유와 협박을 하도록 한

검사가 있다”는 언론보도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④ 김승훈 신부의 폭로 이후 어쩔 수 없이 고문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축소조작은폐 과정에 잇선 개입 사실은 계속 은폐하면서 고문경관 3명을 추가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

- 당시 검찰은 김승훈 신부의 폭로에 대해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곧바로 5월 20일에 2차수사팀(부장검사 신창언, 안상수, 김동섭, 이승구, 박상옥)을 가동하여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5월 21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5월초에 새로운 사실을 인지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3명을 추가 구속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2월 말에 알았다고 하면 ‘석달 가까이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여론의 비난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이때 역시 5월 20일 신문조서를 보면 안상수 검사(조한경 담당)든 박상옥 검사(강진규 담당)든 잇선의 개입문제나 3월 이후 지속된 잇선의 회유협박 문제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

⑤ 사제단과 국민의 반발로 잇선 개입문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만, 결국 3명의 잇선 개입으로 마무리하고 축소 은폐 조작의 경찰측 핵심 당사자인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축소은폐조작의 진상을 은폐한 일

- 2차 수사팀은 “범인조작의 각본은 경찰에 의해 짜여졌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사건조작을 담당하고 연출한 사람들은 전 대공수사 2단장 전석린 경무관, 5과장 유정방 경정, 5과 2계장 박원택 경정, 홍승상 경감 등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제단의 성명서와 여론의 움직임 때문에 21일 발표로 수사를 마무리될 수 없게 되자 이제야 잇선 개입 문제를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면서 대검중수부로 수사주체가 바뀌기도 한다.(박상옥 검사를 포함한 기존 수사팀은 보조수사업무 계속 수행)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3월 이래 지속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른 경찰과 안기부의 조한경, 강진규에 대한 회유협박 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박치원, 유정방, 박원택 등 3명의 책임으로 몰아 이들을 구

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나 두 경관을 회유하기 위해 사용된 1억원 씩 통장에 담긴 총 2억원 돈의 출처가 박처원(차장)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없었다.

- 그럼에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축소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없음’ 처리로 마무리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개입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지휘라인에 있던 전석린 수사2단 단장과 최초의 허위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홍승상 5과 1계장 역시 ‘혐의없음’ 으로 처리된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였다.

⑥ 88년 1월 황적준 부검의와 안상수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대검중수부의 재재수사에서도 축소은폐조작의 중심이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나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밝히는 걸 철저히 외면한 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축소은폐조작의 중심을 은폐한 일

- 그러나 이때 역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구속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건 검찰의 한계를 결코 스스로 극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1차 수사도 아니고 2차 수사까지 했음에도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무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

- 그러나 대검중수부는 국민적 의혹 내용 중 하나였던 1, 2차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 즉 축소은폐조작 과정에 검찰이 개입 내지 방조한 혐의 역시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찰은 축소은폐조작과정에서 이루어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개입문제, 청와대의 개입문제 역시 수사대상에 올리지 못하면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그 책임을 미루고 만다.

-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만, 얼마나 수사가 부실했는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상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는폐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를 어떠한 이유로 ‘잘한 수사’라고 치켜세우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러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물론 검찰만의 잘못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의 책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모면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 물론 이제 막 4년차 검사에 접어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이러한 검찰의 잘못에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 2차 검찰수사팀에서 한 박상옥 검사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축소은폐조작 과정에서 박상옥 검사가 한 역할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박상옥 검사에게 주어졌던 박종철군고문치사은폐조작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세 번의 기회(②, ③, ⑤)를 다 놓친 건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심지어 박상옥 검사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방조라는 형사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결코 과한 지적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은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의 중요성을 안다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상의 지적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국민에게 하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3. 한두가지 남는 반론에 대한 입장

1) 안상수는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까지 했고, 과거(1994) 안상수는 인세 수입 1천만원을 기념사업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실이다. 안상수 당시 검사는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데, 한 때 박종철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을 한다. 안상수 당시 검사가 88년 1월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구속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고, 자신이 고문사실을 밝혀낸 주역인 양 행세하면서 부실수사나 축소은폐조작 과

정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여기에 감쪽같이 속은 결과였다. 안상수 당시 검사는 이후 “안검사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더욱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한다.

- 그러나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힌 진정한 주역 최환 당시 공안부장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검사의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때도 긴가민가 했다. 공안부장 출신의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박종철기념사업회는 결국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새롭게 입장을 정리한다. 화장을 막고 부검을 관철하여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혀낸 주역은 안상수가 아니라 최환이라는 사실, 안상수는 축소 은폐조작의 총괄기관이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검찰측 실무책임자로 사건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 “안검사의 일기”를 통해 그렇게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개입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막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그 사실을 밝히려고 조사에 나서자 이에 협력하기는커녕 적극 회피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기념사업회의 입장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 2011년 3월 안상수 당시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검사의 일기”를 제목만 바꿔서 “박종철열사와 6월민주화운동”으로 다시 발간하면서 “인세수입은 유족과 박종철기념사업회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게 언론에 보도된다. 기념사업회는 곧바로 “당신네들만의 잔치판이라 그리도 뻔뻔합니까? - (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인세수입 기증을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박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는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이에 대해 안상수는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대신한다.

2) 신창언 부장 검사는 이후 헌법재판관까지 했다?!

- 당시 1, 2차 검찰 수사팀 팀장, 신창언은 1994년 9월 민자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당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던 시절임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이미 신창언 부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박종철군고문치사축소은폐조작사건의 수사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강하게 나왔었다는 점 역시 염연한 사실이다. 민변은 “박종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신창언 씨 등의 추천으로 절망을 느낀다.”고 논평했고, 참여연대는 “문제인사들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우리는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한다. 당시에 만약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신창언 부장 검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

- 대법관 임명제청을 중심으로1)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1. 문제제기: 사법과 민주주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 즉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 그 진실을 축소, 은폐,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여당과 임명제청 당사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즉시 열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경력을 은폐하거나 대법원장이 부실 검증을 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²⁾을 구성하는 대법관 충원 문제는 국민이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최근 주요 정책의 사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법권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논쟁의 지점이 된다.

1) 이 논문은 완성본이 아니므로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

2) 헌법 제101조 제2항.

박 후보자의 임명과정을 둘러싼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파행은 현행 대법관
총원과 관련된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법관 총원의 민주적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대법관의 자격과 자질, 추천·제청·동의·임명 절차의 정당성과 합리성 뿐
만 아니라 대법관 총원이 갖는 정치적인 성격을 성찰할 기회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사법권력의 수직적 최상층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하
여 14명의 대법관은 사법권 심사의 최종적인 심판권자로서 사법권력의 핵심
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또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유의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2. 현행 대법관의 (헌)법적 임명 제도

2.1 대법관 임명의 성격과 원리

2.1.1 대법관 임명의 성격

임명(appointment)은 어떤 사람에게 공무원의 신분(身分)과 함께 특정의 직
위를 부여하는 행위³⁾로, 그 사람에게 특정의 직위(position)를 부여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있을 때만 대법관 임명권(the power of
appointing Justices)을 행사할 수 있다.⁵⁾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
에게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다. 임
명권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고를 요구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
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요구하거나 그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432&cid=42155&categoryId=42155> 네이버 행정
학 사전.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임명(任命, appointment) 항목)

4) 위 네이버 행정학 사전의 같은 곳.

5) 헌법 제104조 제2항.

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최종 임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의 권한을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은 단순히 ‘형식적 권고’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한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국회 사이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지명 전에 상원의 자문(Advise)을 거쳐 지명(nomination)한 뒤에는 다시 상원의 동의(Consent)를 거쳐 임명(Appointments)하도록 하고 있어⁶⁾, 대통령과 상원이 대법관의 임명권한을 공유하는 것과 구별된다. 또 영국의 경우처럼 법무장관(Lord Chancellor)이 법에 따라 대법관 전형위원회(selection commission)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정하며 -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통보(notify), 거부(reject) 또는 재고(reconsider)할 수 있다 - 법무장관이 선정된 후보자를 수상에게 통고하면 수상은 국왕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recommendation)해 국왕이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이 경우 수상과 국왕은 법무장관이 통보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⁷⁾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관 전형위원회와 법무장관이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법관 임명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을 창설적으로 구성(원시적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의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창설적 구성’의 성격이란 제헌 상황인 국가의 (신설 및 분리) 독립, 통일과 합병 또는 정변 등에 의한 헌정질서의 무단 중단 등의 헌법 변경을 원인으로 새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대)법원 또는 대법관은 창설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대법관의 임기만료, 사망, 탄핵, 사직, (장기적 심신 미약 등 장

6) 미합중국 헌법 제2편 제2조[2]. “... 대통령은 또한 ... 연방대법관을 ...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이를 임명한다.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7) 영국 헌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23조 내지 제31조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5/4/contents>

기질병을 이유로한 법정) 퇴직, (형의 선고 등에 의한) 파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는 ‘결원/공석 보충’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행 대법관 임명 과정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행위, 국회의 동의 행위, 대통령의 임명 행위의 포괄적 절차를 말한다. 실재에 있어서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명제청의 전단계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청 대상자’를 ‘제시’하기 전에 대통령과의 일정한 협의(consult)가 가능하며, 또한 동 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율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요청한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위한 권한을 일치된 의견으로 행사한 것이 되며,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실제적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의권한을 가진 국회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의 동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절차 중에 있는 즉 국회 본회의에 심사경과 보고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기 전까지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할 수 있다.⁸⁾

따라서 대법관의 제청은 임명권자와의 합치된 의사로 간주되며, 대통령/대법원장과 국회의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⁹⁾ 대법관에 대한 현행의 국회 동의 행위는 민주화의 산물로, 대법관의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8)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과정에서 그 직위를 수락할 것을 약속한 것이 전제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 또는 국회의 특별인사청문 과정과 본회의에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 있는가도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보자 지위’를 사퇴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대법관 취임 전 사퇴’라고 봐야 한다.

9) 87년 현행 헌법 이전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또는 법관회의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대법관의 임명의 민주성이 확보되지도 못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다룬다.

2.1.2 대법관 임명의 법원리

대법관 임명의 법원리는 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 행위(국가원수의 요식행위)이거나 공무원을 임명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제한이 가해지는 행위(제한적 고유권한)의 맥락에서 주로 논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주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파악해, 권위주의적인 헌법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현대 입헌주의적 원리에 충실해서 대법관 임명의 헌법적 원리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헌법기관 구성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원리(특히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대법관은 삼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헌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법원을 작동시키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의 법관도 헌법에 의해서 창설되어 독자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국회가 헌법기관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권력을 행사해 선출했다는 점에서 임명절차 상의 차이가 있다. 일반 판사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 제도에 가깝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타의 고위공직자들과는 차별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법관의 임명(과정)은 선출된 권력행사대리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대표하게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¹⁰⁾은 이런 (임기제) 헌법기관의 창설을 의미한다. 다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전제된다.¹¹⁾ 따라서 대법관의 충원은 공식인 임기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일이다. 또 국가기관 형성의 전제인 ‘대한

10) 헌법 제104조 제1항, 동 제2항 참조.

11) 헌법 제104조 제2항.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2조 제1항의 원리에 직접 구속된다.

둘째, 헌법적인 기본권(특히 재판에 대한 접근권)의 구체적 실현의 일종으로서 대법관 기능에 주목할 수 있다. 이때의 대법관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해석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¹²⁾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구성하며¹³⁾, 이 법관은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¹⁴⁾(대법원장 포함) 14명¹⁵⁾과 법률에 따라 정한 ‘판사’¹⁶⁾다. 따라서 국민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¹⁷⁾기 때문에 입법에 따라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법관의 구성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가책임이다.

2.2 현행 대법관 임명 제도

대법관 “임명”이라는 말은 그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 공식인 대법관을 보는 말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말이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이 단순히 특정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 사법 관료의 자격과 자질은 철저히 점검되거나 심사되어야 한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기 쉬운 “임명”이라는 용어는 분석어로는 미흡하다. 대신 공식(空

12) 헌법 제27조 제1항.

13)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4) 헌법 제102조 제1항.

15) 법원조직법 제4조.

16) 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

17) 헌법 제102조 제2항 후단.

席)인 대법관의 “충원”(filling up the vacancy)이라는 개념으로 현행 대법관 임명 제도를 재구성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충원은 심사대상자의 모집(募集, recruitment), 심사하는 선발(選拔, selection)과 공식적인 공무원 신분의 부여와 그 직위에 배치 즉 관(官)과 직(職)을 수여하는 임명(appointment)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충원을 위한 각 단계마다 인사 관련 전문지식이 동원되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자나 이해관계인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된다. 대법관도 일종의 공직자 충원 대상이다. 다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으로 재판 등 사법 분야에 주된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무직이라는 의미는 취임할 공직을 수행할 역량 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민주성, 그리고 임명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원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라는 의미다. 또 전문직적인 요소는 재판 등 사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할 때 요구되는 자격과 자질의 기준과 충원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2.2.1 대법관 임명제청 추천인 심사대상자의 모집

현행제도에서 대법관의 모집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법관 후보자의 모집이다. 대법관 후보자의 모집은 대법관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성을 갖춘 인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활동 또는 과정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¹⁸⁾에 추천 제청대상 후보자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추천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¹⁹⁾하거나 대법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의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²⁰⁾하는 과정의 이전 단계 활

18)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1항.

1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353호, 2011.9.16., 제정) 제6조 제1항.

20) 위 대법원규칙 제7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10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²¹⁾의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때 추천위원은 법률이 정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여성 1명 이상 포함)²²⁾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모집을 규정한 법령은 없지만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천거 절차와 방법을 공지한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대상자 후보로 천거할 경우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²³⁾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천거절차²⁴⁾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²⁵⁾.

대법원장은 자신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²⁶⁾과 개인 등에 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²⁷⁾은 추천위원회에 제청대상자로 제시하는데, 이 때 심사대상자와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²⁸⁾.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 등을 제시하기 전에 대법관의 법정 임명요건인 ‘만 45세 이상인 면서, 판사·검사·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재직할 경력 20년 이상이 되었는지’ 등²⁹⁾

21)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

22)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23) 위 대법원규칙 제6조 제2항.

24) 위 대법원규칙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말한다.

25) 위 대법원규칙 제8조 제2항 후단.

26) 위 대법원규칙 제7조 제1항.

27) 위 대법원규칙 제7조 제2항.

28) 위 대법원규칙 제7조 제3항.

29)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의 기준으로 명백한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검증한다고 판단된다.

2.2.2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선발

이 단계는 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등을 심사하여, 총원대상의 임명제청 추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³⁰⁾하는 과정과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정하여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는 과정이다. 이때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3배수 이상의 임명제청 후보자의 명단을 제외³¹⁾하고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비공개³²⁾하며, 추천위원이 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³³⁾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상자나 피천거자를 각각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는지 또 다른 지표를 갖고 심사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천거자를 천거자가 공개했을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 등을 제시할 때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 임명요건 이외에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재산 관계와 병역 사항 등을 검증하고, 학력과 경력을 고려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와 진술이 첨부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장 자신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를 제외하고 개인 등이 천거한 모든 피천거인의 경우가 이와 같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주로 법정 임명자격보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배분이나 기타

30) 위 대법원규칙 제8조 제3항.

31) 위 대법원규칙 제8조 제5항.

32) 위 대법원규칙 제5조 제4항.

33) 위 대법원규칙 제9조.

정치적인 고려 사항을 선발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추정된다.

2.2.3 대법관의 임명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 따른 검증단계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후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이다. 둘째,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대통령이 대법관의 관직을 공식 수여하는 과정으로 대법관 취임 예정자 신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다. 후자의 경우는 논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³⁴⁾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³⁵⁾ 대법관의 경우 법률로 국회의 동의를 정한 경우와 달리,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³⁶⁾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³⁷⁾ 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인사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34) 국회법 제43조의3 참조, 인사청문회법 제3조.

35) 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36)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1항.

37)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20일이 완료한 날부터 10일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지 못하며 또한 기간이 도과하도록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³⁸⁾

3.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의 문제점

대법관 임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제도, 사법권 행사의 독립이라는 우리 헌법적인 원리와 사법 영역 전문성의 요청에 따른 직업 법관 제도의 확립이라는 점에 비추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제약된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는 민주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권재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문제점이 많다. 이 장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도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검토한다.

3.1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의 유형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헌법체제하에서 대통령의 전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명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할 수도 있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현실화하는데 많은 법적, 정치적 난점이 존재한다.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⁴⁰⁾ 첫째, 대

38)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 참조.

39) 다만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관의 충원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40) “집권적” 경우는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가진 경우, “분산적인” 경우는 대법원장이 아닌 회

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집권적인 권위주의형”, 둘째,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제청하는 “분산적인 권위주의형”, 셋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법관에 의해 선출하는 “간접적 민주형”, 넷째, 법관추천회의가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분산적인 민주형”, 다섯째, 법률가 자격을 가진 자 가운데 국민이 선출하는 “직접적 민주형”으로 나눌 수 있다.

3.1.1 집권적인 권위주의형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다. 유신헌법 체제(1972.12.27.~1980.10.27.)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체제(1980.10.27.~1988.2.25.) 시기를 말한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⁴¹⁾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군부 헌법은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⁴²⁾고 규정하고 있다.

3.1.2 분산적인 권위주의형

법관(추천)회의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다. 물론 국회의 동의 절차는 없다. 이승만 정권 시기와 1963년 민정으로 이양된 뒤부터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시기이다. 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⁴³⁾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체가 임명제청권을 가진 경우, “직접적인” 경우는 임명제청과정이 없는 경우이다. “직접적인” 경우는 직접대표제를 의미하며, “집권적인” “간접적인” 경우는 의사대표주의 또는 간접대표제를 각각 의미한다. “권위주의형”은 국회의 동의 등의 승인절차가 없는 경우이며, “민주형”은 국회의 동의 절차 거쳐 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이다.

41) 구 헌법 제8호(1972.12.27., 시행 1972.12.27.) 제103조 제2항.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2448호, 1973.1.25., 시행 1973.1.25.) 제37조 제2항.

42) 구 헌법 제9호(1980.10.27. 시행 1980.10.27.) 제105조 제2항.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3362호, 1981.1.29. 시행 1981.1.29.) 제37조 제2항.

43) 구 법원조직법은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1949.9.26., 제정, 시행 1949.8.15.) 제37조. 이 시기의 헌법은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⁴⁴⁾고 규정하고 있다.

3.1.3 간접적 민주형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다. 현행 헌법체제(1988.2.25.~현재)다. ‘권위주의형’에서 ‘민주형’으로 전환했지만, 간접민주주의 제도에 철저하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⁴⁵⁾고 규정하고 있다.

3.1.4 분산적인 민주형

대법관을 선거하는 등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해 ‘법관 선거인단의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4.19혁명 직후 제2공화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시행되지 못했다.⁴⁶⁾ 비록 법관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에 대한 보완이다.

3.1.5 직접적인 민주형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다.

3.2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대통령의 독단적

44) 구 헌법(헌법 제6호, 1962.12.26., 시행 1963.12.17.) 제99조 제2항.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1496호, 1963.12.13., 시행 1963.12.17.)

45)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전부개정된 법원조직법(법률 제3992호, 1987.12.4., 시행 1988.2.25.) 제41조 제2항도 헌법과 동일한 범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원조직법도 같다.

46) 구 헌법(헌법 제4호, 1960.6.15., 시행 1960.6.15.)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 임명권 행사를 통제하는 등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청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제청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대법관 제청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도 못하는 등, 제청과정 전반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주시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을 대법원장이 행사한다는 것을 대법관 임명제청을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즉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대법관 임명 전 과정의 정치적 행위자로 임명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변화된 환경과 상관없이 유신헌법 체제와 신군부 체제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는 상태의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으로 오인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1 추천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그 지위, 위원구성, 그 기능과 추천 심사절차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⁴⁷⁾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며 오직 대법원장이 제시한 제청대상자나 피천거인만을 심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자문’기구로 성격을 규정해 버렸다. 따라서 제청대상자 등결정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 되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를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10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비

47) 앞의 대법원규칙 제2조.

법조인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장이 제시한 추천 대상자를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3.2.2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 제시의 독점

위에서 지적했듯이 대법원장은 심사대상자와 피천거인의 제시를 독점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를 사실상 축소시키고 추천위원회의 심사 자체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3 추천위원회 심사과정의 불투명

추천위원회는 추천할 심사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은 추천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또한 후보자를 비공개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또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의 기준인 전문성(업무처리 능력) 지표와 자질과 관련된 지표인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처럼 대법관 후보에게 요구되는 ‘민주성’, ‘반부패성(도덕성)’ 등은 질적인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3.2.4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후보자 결정 과정의 불투명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의 후보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후보자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또 3배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재량 범위를 넓힌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은 사실상 ‘자문’에 불과하다.

3.2.5 임명제청권자의 설명책임 부존재

제시된 심사대상자 등을 누가(위원, 개인 등) 누구를 천거하였는지나 대법원장 자신이 제시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임명제청을 할

때나 그 직후에도 누가 어떤 이유에서 누구를 천거했는지나 대법원장 자신이 제시한 인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다. 또한 심사과정과 경위, 기준 등을 사후적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 임명제청권자로서의 권한만 행사할 뿐 그에 따르는 설명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2.6 초헌법적 관행으로 제청 후보자 확정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격있고 자질이 되는 정당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청의 결과를 보면, 법조 직역 간의 할당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른바 검사 또는 법관 출신 몫, 대학교 출신 몫 등이 존재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관행이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검사 출신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자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은 한 마디로 ‘제왕적 임명제청’이다.

4. 결론: 임명제청의 민주적 개선방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결국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대법관 등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이때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이다.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종국적 법해석과 기본권의 수호자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은 사법기관 등 국가기구 조직권을 포함한 사법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성을 높일 단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을 대법원에 두되, 그 기능은 독립해야 한다. 둘째,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선임대법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법

원행정처장이 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전체의 간이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수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법학교수로 바꾸어야 하며, 비법조인 3명도 인권, 여성, 장애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고 해당 단체들의 천거를 통한 위촉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인사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천거한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제시 및 천거를 금해야 한다.

넷째,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개인 등(위원 포함)이 천거하는 경우를 폐지하고, 추천위원회에 직접 후보자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추천위원회는 접수된(법정 임명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후보자들의 명단과 간단한 이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여섯째, 대법원 구성원의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대법관 구성의 원칙과 자격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뿐만 아니라 민주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개해야 한다.

일곱째, 추천위원회는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든지 단독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법원장은 수락·재고요청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재고요청을 한 때에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4으로 의결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법원장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으로 박상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촛불시위 재판사건 처리에서 사법부 독립 논란을 불러왔던 그때와 더 비슷하거나 심한 것으로 평가됨
- 고위공직자로서 수치심을 모름. 대법원의 입장도 알지만 어찌겠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 보편의 윤리임에도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
- 국가기관 특히 사법기관 올바름을 구분하는 기관이면 국민에 해명, 설명을 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점점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법에 따라 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의는 내팽개쳐지고 힘과 폭력이 지배하고 있음
- 박상옥 후보자는 현 체제의 공적인 87년 체제의 부정을 의미함.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체제를 부정한 바 있음.
- 민주주의 획득은 선거제의 민주주의 확립과 과거사의 극복에 있었음.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은 우리 사회가 과거사 극복이 안된 것을 드러낸 것임. 노무현 정권 당시 심지어 국가정보원도 과거사 청산을 하였으나, 유일하게 2곳인 법원과 검찰은 과거사청산을 하지 않았음. 법원은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로 그쳤고 검찰은 아예 하지도 않았음. 사법 영역에서 과거사 청산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박상옥 후보로 되살아난 것으로 평가됨.

□ 대법관 후보 추천시스템 핵심 문제

- 추천위 구성 엉터리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의 모임이 아니라 원장 25명의 모임에 불과함. 원장은 총장이 선정하는 인사로서 일종에 이들의 계모임의 성격을 띄고 있음. 또한 법학교수회도 전체 법학교수의 대표가 아니므로 대표성이 없음.

- 철저한 비밀주의

-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인사는 부적격이 아니면 추천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천거한 피천거인은 적격자만만 심사대상으로 제시됨.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지명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

□ 대법관 추천, 지명을 대법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체 법관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므로 전체 법관 의견 반영 시스템 되어야 함. 한 사회 최고 법 운용자 선출 의미에서 시민사회 또는 최소한 국회도 관여해야 함. 법관 대표 반, 시민사회 대표 반 정도 해서 대법관 후보 뿐 아니라 모든 법관 인사평정에 관여제도 확립이 필요함.

□ 신영철 대법관의 인사기록에는 잘못된 점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음. 이런 인사가 대법관 최고법관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됨.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신수경(새사회연대 상근대표)

□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 결정문을 보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를 밝혀냈지만 청와대 등의 뒷선개입을 제대로 밝혀 지지 못했음. 그리고 당시 사망 이후 사건의 처리 과정의 사실도 제대로 기술 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참고인 등으로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진화위 결정문에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인사들 중 진화위가 조사한 11명의 참고인 명단 중 박상옥은 빠져 있음. 진화위 조사 당시 2008년 경 박상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 었음

□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진화위가 요청을 안했는지 박상옥 후보가 조사를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사법 과 거청산의 한계를 명백해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지점으로 중요 하게 봄

□ 검찰 출신 대법관은 권위주의 정권의 유습으로 청산해야 할 잔재 중의 하나임

□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법조인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의 가치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추천위 논의가 공개될 필요 있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단순히 대법원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직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명제청 과정이 공개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함

□ 지난 2월 25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후보의 추천과 제청경위 등을 밝히라는 공개요구서를 보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요구서에 대해서도 왜 답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대법원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의 개선방안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 추천위 구성에 법조인 줄이고 구성의 다양성 실현해야 함.

□ 대법원, 대법관이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확인하고 확산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박상옥 후보의 자격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고 대법관이 된다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됨. 사회적으로 더 확산되어야 함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성창익(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1. 바람직한 대법관상

가. 대법원의 역할과 대법관에 요구되는 덕목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 해석 기능 외에 구체적인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인권 보호, 소수자 보호, 권력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이에 따라 대법관은 사건처리 능력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출 것이 요구됨

- 투철한 정의감
-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 의지
- 사회의 다양한 의사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

나.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의 문제점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관 후보 개인의 품성을 떠나서 그 경력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덕목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됨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권력의 남용과 인권 탄압이 시민사회의 힘에 의하여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으로서 민주화의 단초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그 초기 부실 수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가 승승장

구하고 대법관 후보로까지 되는 것은 국민의 정의관념에 맞지 않고, 그 자체로 최후의 인권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

말석검사여서 수사 상황을 잘 몰랐다거나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할 일국의 대법관 후보로서의 적절한 변명은 아님

담당검사임에도 고문치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은폐하였다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사유가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가 임명 제청 시 간과되었다는 것은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권자가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그러한 사유를 가벼이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임

최근의 위헌정당해산결정 등으로 대표되는 공안정국, 사회 전반적인 시민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 인권보호 및 권력견제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 퇴조 등의 기초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대법관 임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가 관례적으로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왔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견을 듣는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그러다 보니 대법관 임명에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

고,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대법관 후보의 경력이나 성향도 결정되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음

또한, 대법관 후보 천거 및 추천까지의 과정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청권 행사의 적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절차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됨

먼저 대법관 후보 추천이 대법원장의 의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법원 내 인사를 줄이고 대다수를 각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법원 외의 독립적인 인사로 충원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제7조 제1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과정에서 각종 법률가단체,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 의견개진 등을 거치고 있는 미국의 예와 같이, 대법관 후보 천거 및 추천 과정을 공개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된 사람들에 대하여 법률가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개진을 받는 등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피천거인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로 하여 그 명단을 퇴임예정대법관의 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서기호 의원 등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할 만함)

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요구됨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비슷한 엘리트 남성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움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위하여 여성, 검찰, 변호사 또는 교수 출신의 대법관을 가끔 제청, 임명하기도 하나, 실상은 그 성별, 출신에 관계 없이 법원 또는 검찰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경험이나 성향에서 실질적 다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래에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표방하며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 업무를 분담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고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은 그 소속 판사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법원 내 고위법관의 승진코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획일적 엘리트 법관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음

대법원 구성원 중 적어도 1/2은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비법관 출신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음(장운석 의원 등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수의 1/2을 비법관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하는 대법관의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법관 임명 제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법관이나 검사의 직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나아가,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비법조인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재판소법의 예와 같이, 변호사 자격은 없으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과 같이 법률적 소양이 있는 비법조인 중에서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목차

- 부록1.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관련 경과 / 1
- 부록2. <공동기자회견문>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라!(2.24) / 3
- 부록3. <의견서>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라!(2.24) / 4
- 부록4.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2.25) / 5
- 부록5. <민주사법연석회의 성명>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여당 원내대표인가?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자와 제청이유, 검증 절차와 내용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3.3) / 7
- 부록6.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제청 보도자료(1.21) / 8
- 부록7.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안(1.26) / 14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관련 경과(2015)

- 01.1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추천 발표
※ 추천위원회 구성 :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비당연직 위원)
- 01.16. 상지대 범대위 사학비리 논란이 있는 김문기 총장 측에 정이사의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결정에 참여한 책임으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임명 반대 입장 발표
- 01.20. 교수 4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상옥 후보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서 상지대 등의 '비리사학 재단'의 복귀 길을 열어준 인물로 임명 반대 성명
- 01.21.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발표
- 01.2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반대한다” 논평 발표
- 01.26. 박근혜 대통령,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02.03. 서기호 정의당 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 고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검사 경력과 고문치사 은폐 의혹 제기
- 02.04.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없다” 공동기자회견
- 02.03. 경향신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 1992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 사실 보도
- 02.04.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 없다’ 성명 발표
- 02.12. 참여연대·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

의회·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서울대민주동문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02.24. 민주사법연석회의·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추모단체연대회의·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2월 내 실시 불가 결정

02.25.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 기자회견 및 공개요구서 전달

02.26. 서울지방검찰청, 고 박종철 열사 유족이 공개를 요청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일부만 공개

03.02.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한 이완구 국무총리에 “청문회가 사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라며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발언.

03.03.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상옥 대법관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 촉구 서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장의 서한전달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여당 원내대표인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자와 제청이유, 검증 절차와 내용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성명 발표

03.04. 민주사법연석회의(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최의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긴급 집담회” 참석

참여연대,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논평발표

03.07. 한겨레신문, 박상옥 후보자 고문치사사건 항소심 공판기록에서 1차 수사 당시 고문수사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사실 보도

03.11. 경향신문 등 박상옥 후보자 고문사실 은폐 경찰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미조사로 사건은폐 사실 보도

<공동기자회견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라!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국회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국회의 의무 방기니 정치공세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미 후보로 알려진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야당까지 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실시는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이며 국가적 낭비일 뿐이다. 한 달이 다되도록 본인은 물론, 어떠한 국가기관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대법관 임명은 단지 대법관 공석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할 것인가이다. 대표적 무자격자인 신영철 대법관이 떠난 자리에, 오로지 검찰 출신 대법관 몫에 연연하는 인사를 앉히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수치이며 비극이다.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이번 대법관 공백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검증하고 임명동 의해야 할 권한있는 국가기관들에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후보자의 이러한 경력이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대통령 검토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는 그 사실, 전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대법원장 제청을 받은 대통령 역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음은 분명하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검찰내 외압으로 은폐축소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 검찰 출신으로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성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아니라, 우선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인선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시바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고귀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고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임명과정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촉구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검찰 재직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당시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에 대한 은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는 지금까지도 박상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는 경력과 수사은폐 의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과정,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정 중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야 공개적으로 알려져 더욱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 후보 검증부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박상옥 후보가 의도적으로 관련 경력을 누락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던 해당 기관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은 법조경력이 화려한 법전문가의 능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기는커녕 그 다음해에 3년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검찰 내에서도 승진을 거듭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지검장으로 검사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수사은폐로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이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는 처음 수사은폐 논란이 제기될 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의혹이 더 제기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로지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영욕만 가득한 인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의 강행은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단하여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추모단체연대회의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준)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

양승태 대법원장님,

지난 1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서는 1월 21일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고 박종철 사망사건 수사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해당 사건을 축소시킨 의혹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여, 급기야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날짜 조차 정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법 최고 권력기관인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국가 주요 정책과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 제청 권한의 행사도 국민주권에 따라 행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의 추천, 제청, 임명 등의 요청과 임명의 전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자질 그리고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독재시절에 검사로, 주요한 시국 사건 그것도 군사독재 권력의 물고문에 의한 사망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파괴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제청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출세를 위해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시킨 검사를 정치 검사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은 박 후보자를 '정치 검찰'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출세한 정치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작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장께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도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를 위한 절차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대법원장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 인사인 ‘박상옥’ 후보를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추천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박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대법원장님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경력이나 이력이 검증 또는 논의 되었는지, 만약 논의되었다면 그 경력은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검사 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관행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검사’ 출신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 또는 제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 대법원장께서는 논란이 있는 인사를 제청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사법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민주사법연석회의 성명〉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가? 여당 원내대표인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자와 제청이유, 검증 절차와 내용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3월 2일 대법원장을 예방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인 사청문에 대해 정부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3월 3일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부 역할을 망각한 대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런 행보는 무자격자를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법관 공백사태를 핑계로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적반하장같은 처사이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행위는 임명제청권자 지위를 넘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양 대법원장은 2012년 4명의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공백이 명백하여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1인 공석으로 “일정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배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논리도 대법관 공석으로 내부 운영을 잘 못하니 무조건 동의하라는 일종의 시위이자, 정치적인 협박이나 다름 없다. 본질적으로 헌법 파괴적인 행위이다.

대법원장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월 25일 대법원장에 공개요구서를 접수하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자와 제청근거, 박종철 사건 수사관여 검증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답변도 문의도 없었다. 국민에는 입을 닫고 오직 권부들의 협의와 강행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의식의 결여와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경위와 검증절차를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재 대법관 공백사태의 책임자는 유일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제청할 권한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 박종철 사건의 헌정사적 무게와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무자격 인사를 임명제청하여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은 그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15년 3월 3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h1 style="font-size: 2em;">보도자료</h1> <p>2015. 1. 21.</p>	 <h2 style="font-size: 1.5em;">대 법 원</h2> <p>Supreme Court of Korea</p>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사제1심의관 이홍주 인사제2심의관 호성호 인사기획심의관 이창경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관 제청

-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 청 내 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였음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 하였음

- 대법원장은 위와 같은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 최고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로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였음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하는 등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관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별첨

- 향후 대법관 구성(예상) : 별첨

【박상옥(朴商玉)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56. 11. 13.생 (58세). 경기 시흥 출생

1975. 2. 경기고 졸업

1978. 6. 제2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1기)

1979. 2. 서울대 법대 졸업

1984. 9. 서울지검 검사

1988. 3.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1991. 8. 부산지검 검사

1993. 9. 대검 검찰연구관

1996. 8.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1999. 6.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2001. 6. 서울고검 검사

2003. 7. 대전고검 검사

2004. 2.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2006. 2.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 3. 서울북부지검장

2009. 2.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2011. 9.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2014.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現)



1987. 3.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1988. 7.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

1993. 3.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1995. 9.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1997. 8. 사법연수원 교수

2000. 7.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2002. 2.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 파견

2003. 8. 서울고검 검사

2005. 4.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7. 2. 의정부지검장

2009. 1. 의원면직

2010. 4. 법무법인 산호 변호사

2012.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프로필

-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반부패 전문가로 명성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약 25년을 검

사로 재직하면서 선비처럼 온화하면서도 매사에 치밀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히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성품과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이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음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을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여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다수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하였으며,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 시 중소벤처기업이 국책연구과제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등 외부로 유출한 벤처사업가를 구속하는 등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특히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에 파견되어 준비사무국장으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며,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음

- 미국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 겸비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하여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질 만큼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로 재직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검 외사부장과 반부패 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여 실무가로는 물론이거니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도 실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국제기구와 해외 학회 등 해외사법과의 교류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사건을 폭넓게 조명하는 데에 기여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 등 여러 법조 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사건을 보다 폭넓게 조명하여 심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가족관계

부인 정귀약(58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

▶ 대법관 구성 (예상) ◀

순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		출신대학	출신고교	출생지
			사시	연수원			
1	민일영(閔日榮)	55.04.15	20	10	서울대 법대	경북고	경기 여주
2	이인복(李仁馥)	56.08.05	21	11	서울대 법대	대전고	충남 논산
3	이상훈(李尙勳)	56.10.09	19	10	서울대 법대	광주제일고	광주
4	박병대(朴炳大)	57.09.05	21	12	서울대 법대	환일고	경북 영주
5	김용덕(金龍德)	57.11.20	21	12	서울대 법대	경기고	서울
6	박보영(朴保泳)	61.03.13	26	16	한양대 법대	전주여고	전남 순천
7	고영한(高永鐸)	55.02.07	21	11	서울대 법대	광주제일고	광주
8	김창석(金昌錫)	56.03.02	23	13	고려대 법대	휘문고	충남 보령
9	김 신(金 伸)	57.03.30	22	12	서울대 법대	부산고	부산
10	김소영(金昭英)	65.11.17	29	19	서울대 법대	정신여고	경남 창원
11	조희대(曹喜大)	57.06.06	23	13	서울대 법대	경북고	경북 경주
12	권순일(權純一)	59.07.26	22	14	서울대 법대	대전고	충남 논산
13	박상옥(朴尙玉)	56.11.13	20	11	서울대 법대	경기고	경기 시흥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13806
----------	-------

제출연월일 : 2015. 1.
제 출 자 : 대 통 령

주 문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박상옥)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2015. 2. 17.)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 : 박상옥 (朴尙玉)
- 생년월일 : 1956년 11월 13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xx길 x-xx, xxx호
(이촌동, xxxxx)

※ 붙 일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 명 : 박 상 옥 (朴 商 玉)

생년월일 : 1956. 11. 13.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6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국민 권의 보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판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역의 너를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여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하였음.
- 특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 시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을 맡아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준법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음.

- 뿐만 아니라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하여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질 만큼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치면서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와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
- 평소 은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 성품과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선배와 동료의 귀감이 되었고, 재조와 재야를 막론하고 두루 신망이 두터움.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이처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의 실현하는데 헌신하고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해 온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안목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실현에 대한 신념과 학문적 소양,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상훈수여증명서

이 력 서

성 명 : 박 상 옥 (朴 尙 玉)

생년월일 : 1956. 11. 13.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xx길 x-xx, xxx호
(이촌동, xxxxx)

직 업

2014. 1.	~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	---	----	---------------

학 력

1972. 3.	~	1975. 2.	경기도등학교 졸업
----------	---	----------	-----------

1975. 3.	~	197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	-------------------

경 력

1978. 6.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4. 9.	~ 1987.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3.	~ 1988.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1988. 3.	~ 1991. 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1. 8.	~ 1993.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3. 3.	~ 1993.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993. 9.	~ 1995. 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5. 9.	~ 1996. 7.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6. 8.	~ 1997. 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
1997. 8.	~ 1999. 6.	사법연수원 교수
1999. 6.	~ 200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2000. 7.	~ 2001. 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2001. 6.	~ 2002. 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2. 2.	~ 2003. 7.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 과장)
2002. 8.	~ 2003. 8.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03. 8.	~ 2004.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4. 2.	~ 2005.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2005. 4.	~ 2006. 2.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06. 2.	~ 2007. 3.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7. 3.	~ 2008. 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 3.	~ 2009.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1.		의원면직

2009. 2.	~ 2010. 3.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2010. 4.	~ 2011. 8.	법무법인 산호 변호사
2011. 9.	~ 2014. 1.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2014. 1.	~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병역

1981.12.	~ 1984. 8.	육군 중위(만기전역)
----------	------------	-------------

상훈

1989.12.		검찰총장 표창
2003.12.		홍조근정훈장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별지 제 1호 서식)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공 직 후 보 자	①성명 (한자)	박 상 옥 (朴 商 玉)	②구 분	임 명 동 의	③예정직위	대 법 관
			④주민등록 번 호	561113- xxxxxxxx	⑤전화번호	자택 02-795-xxxx 직장 02-575-xxxx
	⑥주소	자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훈로xx길 x-xx, xxx호 (이훈동, xxxxx)				
	직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xxx				
	⑦등록 기준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xxx번길 x				
	⑧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2)부 □ 복무확인서 ()부					
	본인은 공직자들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위 공직후보자 박 상 옥 (서명 또는 인)					
	국회의장 귀하					
	첨 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직후보자는 이 신고서류의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구분	임명동의	②예정직위	대법관	③성명	박상옥	
④본인과의 관계	⑤성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병역사항	⑨비고
			⑩등록기준지			
본인	박상옥 (朴商玉)	561113- xxxxxxx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xx길 x-xx, xxx호(이촌동, xxxxxx)	관 별 : 육군 계급 : 중위 관 번 : xxxxxxx	입영일: 1981.12.19. 전역연월일 : 1984.08.31. 전역사유 : 만기	
장남	박희준 (朴希濬)	880322- xxxxxxx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xx길 x-xx, xxx호(이촌동, xxxxxx)	관 별 : 공군 계급 : 병장 관 번 : xxxxxxxxxx	입영일: 2009.07.27. 전역연월일 : 2011.08.20. 전역사유 : 만기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xxx 번길 x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xxx 번길 x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최초재산신고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성명	박상옥	임용예정직	대법관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천원)	비고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계×층 계×××호 204.84㎡		668,000	2014 기준시가
	자동차	2014년식 제네시스 (배기량 3,342cc) ××주×××××		52,950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예금	신한은행(779,984), 한화생명보험(4,488)		784,472	잔액증명서
	(소계)			1,505,422	
배우자	예금	신한은행(219,778), 한화생명보험(3,108)		222,886	잔액증명서
	(소계)			222,886	
부	임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산××× 임야 2,677㎡		5,032	2014公示지가
	도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도로 67㎡		1,996	2014公示지가
	묘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묘지 30㎡		59	2014公示지가
	농기주택 및 농가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단층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대지 300㎡, 건물 189.08㎡		111,000	2014 개별주택가격
	예금	화도농업협동조합(6,500), 화도농협(1,580), 화도우체국(21,000)		29,080	잔액증명서
	(소계)			147,167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성명	박상옥	임용예정직	대법관		
모	예금	화도우체국(20,000)		20,000	잔액증명서
	(소계)			20,000	
차녀	예금	삼성생명보험(2,727), 신한은행(34,274), 우리은행(0), IBK기업은행(9), 하나은행(24,382)		61,392	잔액증명서
	(소계)			61,392	
장남				0	재산없음
총계				1,956,867	
<p>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15년 1월 26일</p> <p>위 공직후보자 박상옥 (서명 또는 날인)</p>					
국회의장 귀하					

최근 5년간의
소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납세사실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납세(체납)증명서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계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문의 : 간사단체(새사회연대 02-2235-0062, nsociety@naver.com)